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4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치경찰제 전환에 발맞춰 주민의 범죄 두려움 감소 등 동작구 내 공공디자인 적용 대상 선정 시 범죄예방진단 실시 등 동작경찰서와 동작구청간 협업사항을 구체화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 사업 구체화(안 제18조제4호, 제7호)
- 나. 동작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작구가 설립한” 을 “구가 설립한” 으로, “동작구가 출자·출연한” 을 “구가 출자·출연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 을 “등을 하는 것”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 를 “사항을” 로 한다.

제15조제5호 중 “도시공간이” 를 “도시공간의” 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우범지역” 을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지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범죄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 를 “서울특별시 동작경찰서(이하 “동작경찰서” 라 한다)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 구역”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정하는” 을 “인정하는” 으로 한다.

제22조제5호 중 “아니 하다고” 를 “않다고” 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회의록을” 을 “회의록은” 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30일 이내” 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 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이내” 를 “이하” 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학술기관 및” 을 “학술기관 및 동작경찰서 등”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동작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해제 등 협업요청 시 합동 범죄예방진단에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u>동작구가 설립한</u> 공기업, <u>동작구가 출자·출연한</u>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p> <p>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가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p> <p>3. ~ 5. (생략)</p> <p>제12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u>사항</u>이 포함되어 수립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 -----.</p> <p>1. ----- ----- <u>구가 설립한</u> ----- <u>구가 출자·출연한</u> ----- ----- ----- ----- ----- ----- -----.</p> <p>2. ----- ----- ----- ----- <u>등을</u> <u>하는 것</u>----- -----.</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12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사항</u> ----- -----.</p>

1. ~ 6. (생략)

③·④ (생략)

제1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1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5.·6. (생략)

7. 범죄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 및 전문기관에서 협업을 요청한 사업

8. (생략)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

1. ~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

-----.

1. ~ 4. (현행과 같음)

5. ----- 도시공간의 -----

제1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

-----.

1. ~ 3. (현행과 같음)

4.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지역 -----

5.·6. (현행과 같음)

7. 서울특별시 동작경찰서(이하 “동작경찰서”라 한다)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

8.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 6. (생략)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2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생략)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생략)

제27조(심의절차)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

-----.

1. ~ 6. (현행과 같음)

7. -----

인정하는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위원의 해촉)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않다고

6. (현행과 같음)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회의록은 -----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심의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
청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이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⑤ (생략)

제33조(협력체계 구축)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생략)

제35조(관계기관 등의 협력) ① 구청
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 「민원 처리에 관
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
-----.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협력체계 구축)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이하-----
-----.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관계기관 등의 협력) ① -----

----- 학술기관 및 동작경찰서 등 -----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동작경찰서에서 범죄예
방 강화구역 지정·해제 등 협업 요
청 시 합동 범죄예방진단에 협력할
수 있다.